제28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9년 6월 19일(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6. 19.
교육사회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 종 호 의원 외 7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09년 6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6. 11 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종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구체화 등 의료원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안 제3조제3항단서)
○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안 제6조)
○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구체화(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임원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안 제3조제3항단서)

○ 임원의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당연직 이사는 추천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나.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안 제6조)

○ 의료원 상호간 의료 인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균형 있는 인력 배치로 의료발전에 기여함.

다.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 함.

라.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구체화(안 제10조)

○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 인사와 보수, 중요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구체화 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명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원간 상호협의를 통한 인사교류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Ⅸ.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설립 및 운영조례"을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설립 및"을 **"설립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1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9조의 의하여 "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중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의료원"을 **"의료원"**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 1인"을 각각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이사 및”을 **“이사와”**로 한다.

④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며, 도 감사담당부서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

1.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 중 “병원 또는”을 **“병원,”**으로 하고, “연구 또는”을 **“연구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문가 또는”을 **“전문가나”**로 한다.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하고,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의료법인 또는”을 **“공공의료법인이나”**로 하며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을 **“의료원 운영의 전부나”**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조(인사교류)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나 원장의 협의에 따라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3.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와 제5조 본문 중 각 항의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제2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조(임원) ①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이사는 법 시행령 제9조의 의하여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1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중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인	2.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신 설)	**④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며, 도 감사담당부서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과 원내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과 원내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 9조제1항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된다.	**제4조(이사회) ①법 제 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각 호의 모두와 같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① (생 략)	제5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나**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 설)	**제6조(인사교류)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나 원장의 협의에 따라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권한 및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권한 및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1.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이나**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신 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3.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⑤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 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